

소형항공운송사업
표준안내문/계약서

KOREAN AIR

대한항공 소형항공운송사업 안내

(대한항공 전용기 사업 안내)

1. 법적 근거

-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장소)에 따라 항공 교통 이용자가 대한항공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운임, 운송 약관, 피해 구제 계획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2. 운임

- 대한항공의 소형항공운송사업 운임은 고객이 요청하는 여정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항공기의 운항 예상 시간에 기종 별 시간당 요금이 적용되어 기본 요금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여정에 따라 항공기 대기료, 미취항 공항 할증 요금 등이 추가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류할증료 등의 추가 요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소형항공운송사업 운임 : 기본 요금 + 추가 요금
- ◆ 기본 요금 : 항공기 운항 시간 X 기종 별 시간당 요금
- ◆ 추가 요금 : 항공기 대기료, 유류할증료, 미취항 공항 운항 할증 요금 등

3. 운송 약관

- 대한항공과 항공 교통 이용자가 체결하는 “자가용 비행기 전세 계약서”가 운송 약관에 우선합니다.
- 단, 동 계약서에 미 규정된 사항은 대한항공 국제/국내 운송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4. 피해 구제 계획 및 피해 구제 신청서

- 대한항공 소형운송사업은 대한항공 국제/국내 운송 사업의 항공 교통 이용자 피해 구제 계획 및 피해 구제 신청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Business Jet 전세 계약서

계약번호 : --

본 계약은, 주사무소를 서울 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에 둔 주식회사 대한항공 (이하 “대한항공” 이라 칭함)과 (전세자 주소)에 주소를 둔 (업체 명) (이하 “전세자” 라 칭함)간에 년___월___일부로 체결합니다. 전세자는 대한항공에 항공기를 요청하고, 대한항공은 본 계약에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는 전세조건에 따라 전세자에게 전세항공기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쌍방(雙方)은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Schedule 1. 기재(機材) : 기종 (기번)

Schedule 2. 가용 좌석 수 및 수하물 탑재량

- 최대 좌석 수 : 최대 00 석(항공기 탑재 허용 중량 범위 내 변동가능)
- 수하물 최대 허용 탑재량 : 항공기 탑재 허용 중량 범위 내
- 기타 : 발화성/인화성 물질, 고압가스 용기, 무기 및 폭발물류,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Schedule 3. 운항시각 및 경로 예정표

편명	년/월/일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각	도착시각	비고
						탑승
						탑승

- * 상기 스케줄은 관련 기관 허가 취득 조건입니다.
- * 상기 스케줄에 포함된 승객 미탑승 구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전적인 권리를 보유합니다.

Schedule 4. 전세요금

구분	적용구간	금액(원)	비고
운항 요금			00 시간 00 분 운항 요금
유류 할증료			
VAT			총 금액의 10%
*전세요금 합계			

- * 전세요금은 운항 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VAT 는 대한민국 국내선 운항에 한정하여 징수합니다.

Schedule 5. 지불 조건 (한국시간 기준)

- 가. 최초 출발지점 출발 예정일 14 일 이내 계약 시
 - 계약 체결 후 24 시간 이내 전세가의 10% 납입
 - 최초 출발지점 출발 예정일 4 일 전 완납
- 나. 최초 출발지점 출발 예정일 15 일 전 계약 시
 - 계약 체결 후 24 시간 이내 전세가의 10% 납입
 - 최초 출발지점 출발 예정일 10 일 전 전세가의 20% 추가 납입
 - 최초 출발지점 출발 예정일 4 일 전 완납

* 대한항공 납입 구좌 : (해당 납입 구좌)

* 전세금이 지불 조건에 따라 납입되지 않을 경우 대한항공은 동 계약에 포함된 항공기의 운항 준비 및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Schedule 6. 취소 수수료 (한국시간 기준)

- 가. 계약일로부터 4 일 이전까지 취소 시 전세가의 10%
- 나. 최초 출발지점 출발 예정일 3 일 이내 취소 시 전세가의 30%
- 다. 최초 출발지점 출발 예정일 1 일 이내 취소 시 전세가의 50%
- 라. 출발 후 부분 취소로 최초 계약 여정 대비 전세가가 낮아지는 경우 차액의 30%

대한항공과 전세자는, 본 계약서의 모든 조건, 규정, 기술 및 전세조건과 기타 추가합의사항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식회사 대한항공

성명 : _____(印)

직책 : _____

전세자 (“업체 명”)

성명 : _____(印)

직책 : _____

전 세 조 건

제 1 조 총칙

- (1) 본 계약은 전세자가 그 자신과 하기 제 5 조 (1)항에 따라 특정되는 모든 여객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객은 본 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함으로써, 대한항공과 본 전세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 계약의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전세자를 통해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2) 본 계약 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이 바르샤바 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일 경우,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몬트리올 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일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르샤바 협약"이란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또는 1955 년 9 월 28 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이란 1999 년 5 월 28 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되고, 2003 년 11 월 4 일 국제적으로 발효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을 말합니다.
- (3) 상기(2)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과 이에 부수(附隨)되는 모든 서비스는 본 계약의 모든 규정, 적용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구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항공의 운송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4) 본 계약과 대한항공의 운송약관 조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2 조 탑재용적 및 용량의 제한

여객 및 수하물은 Schedule 2 의 항공기의 허용 탑재용적과 용량의 범위 내에서 운송됩니다.

제 3 조 전세항공기

- (1) 대한항공은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Schedule 1 에 명시된 항공기(이하 "전세항공기"라 함)를 승무원과 함께 제공합니다.
- (2) 전세항공기의 이용 가능한 좌석수와 수하물의 탑재량은 기상, 운항거리, 활주로 거리 등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며, 대한항공은 기상 조건이나 항공기 운항상, 정비상 또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전세항공기는 항상 대한항공과 그의 운항승무원의 지휘와 통제하에 운항됩니다. 대한항공은 사전통고나 어떠한 책임 부담 없이, 탑재량, 탑재위치, 비행경로, 최초 출발지점과 모든 중간지점에서의 출발시각, 목적지 도착시각, 비행실시여부 및 착륙지점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전세자와 여객은 당해 결정을 준수하고 대한항공이나 그의 승무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4) 대한항공은 내부적인 사정이나 그의 판단으로 전세자에게 계약된 전세항공기를 제공함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타 기종의 자가용 비행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체 항공기의 전세요금이 기존 항공기의 전세요금보다 높은 경우 전세자는 그 차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대체 항공기의 전세요금이 기존의 항공기의 전세요금보다 낮은 경우 대체 항공기의 전세 요금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세자는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대체 항공기의 선택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가 대체 항공기 선택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 경우 대한항공은 전세자에게 취소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세자는 대한항공에 전세대금의 환불 이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4 조

- (1) 대한항공은 전세항공편의 전세자에 의해 이용되지 않는 공간에 대해 제 3 의 전세자나 개인, 기관에 판매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 (2) 전세자나 승객에 이용되지 않는 전세기의 공간은 우편, 화물, 대한항공의 자체 소유물품 혹은 기타 모든 용도에 대하여 상기 Schedule 4 에 명시된 전세요금의 조정이나 별도 비용 지불 없이 대한항공의 재량 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전세자의 필요조치

- (1) 전세자는 Schedule 3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항하는 전세항공편이 최초 출발지점을 출발하기 전에 해당항공편으로 운송될 모든 여객의 명단과 수하물 품목 및 가격을 기재한 명세서를 대한항공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명단과 명세서는 전세자 및 모든 여객에 대한 확정적인 사항으로 구속력을 가집니다.

- (2) 전세자는, 대한항공이 서면으로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chedule 3 의 출발시각 최소 40 분전까지 모든 여객이 도착하고 수하물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여객이나 수하물 미도착 또는 지연도착을 포함한 어떠한 사유로도 전세항공편의 출발을 지연시킬 의무가 없으며, 그로 인해 전세자나 여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전세자가 출발의 지연을 요청하여 대한항공이 이에 응할 경우, 전세자는 해당 지연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에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요금, 비용, 경비를 대한항공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3) 전세자는 그 자신이나 모든 여객이 본 계약에 의거하여 운항되는 전세항공편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도착지 국가의 적용법령, 정부규정, 명령, 요구 또는 여행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 (4) 전세자는, 그 자신이나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여객이나 제 3 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 대한항공이 책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배상 및 비용(소송비용 및 경비포함) 청구에 대하여 대한항공을 면책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 6 조 항공편의 SCHEDULE 지연 및 취소

- (1) Schedule 3 에 명시된 전세항공편의 운항 시간표와 경로는 예정에 불과하며, 대한항공이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2) 아래의 사유 발생시 대한항공은, 전세자, 여객 또는 당해 전세항공편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 3 자에게 사전 통고나 어떠한 책임 부담 없이, 전세항공편을 취소, 중단, 우회, 연기, 조발 또는 지연하거나 여객이나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탑재치 않고 전세항공편을 출발하거나, 당해 항공편의 출발지 또는 착륙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1) 대한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기상조건,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불가항력,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공항의 운항시간 제한, 전쟁, 적대행위, 항공기 납치, 소동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으로서,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이 보고된 것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한 어떠한 지연, 요구, 조건, 상황 또는 요건
 - 2) 예측,예기 또는 예지치 못한 사실
 -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
 - 4) 노동력, 연료나 설비의 부족 또는 대한항공이나 기타인의 노동문제
 - 5) 전세항공편의 안전에 관련된 정비상 또는 운항상의 문제

전세항공편이 최초 출발지점 출발 전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대한항공은 징수한 전세요금, 기타요금 및 비용에서 당해 전세항공편을 위하여 대한항공이 실제로 부담한 모든 요금 및 비용을 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전세항공편이 최초 출발지점 출발 후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송을 행한 부분에 대한 전세요금과 기타요금 및 비용은 재산정되며, 당초 징수된 금액과 재 산정된 금액 간에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합니다.

제 7 조 전세요금과 지불조건

- (1) 전세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Schedule 4 에서 정하는 전세요금을 Schedule 5 에 정하는 기한 내에 소정의 방법으로 대한항공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2) Schedule 4 에 명시된 전세요금은 전세항공편의 승무원비, 항공연료비, 정비비, 기내식비 및 동 Schedule 에 특정된 기타 경비, 요금을 포함합니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운송될 여객이나 수하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제경비 (지상운송비, 입국사증비, 세관검사, 수수료, 관세, 세금, 벌금 및 기타 요금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는 전세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전세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Schedule 4 에 명시된 전세요금 외에 전세 운항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비 (deicing 등)에 대해서는 전세 운항 완료 후 전세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전세자가 Schedule 5 에 정하는 방법으로 소정의 기한 내에 전세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항공은 사전 서면보고나 어떠한 책임 부담 없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전세자는 하기 제 8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대한항공에 즉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5) 대한항공은 전세요금 책정의 전적인 권리를 가지며, 해당 요금의 산출 근거 등 세부 사항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시점에 따라 시장상황이나 대한항공 내부 정책에 의해 전세요금 변동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나 기 완료 운항에 대해 전세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에서는 내부 기준을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세요금을 산정하고 있음을 안내 합니다.

제 8 조 전세자에 의한 계약 취소 등

(1) 전세자는 대한항공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해 취소통고는 대한항공이 그 통고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전세자가 상기와 같이 취소를 하거나, 대한항공이 제 7 조(4)항이나 제 9 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 대한항공은 전세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 1) 전세항공편의 최초 출발지점 출발 예정일 4 일 이전까지 취소통고 접수 시, Schedule 4 에 정한 전세요금의 10% 금액
- 2) 전세항공편의 최초 출발지점 출발 예정일 3 일 이내 취소통고 접수 시, Schedule 4 에 정한 전세요금의 30% 금액
- 3) 전세항공편의 최초 출발지점 출발 예정일에서 1 일 이내 취소통고 접수 시, Schedule4 에 정한 전세요금의 50% 금액
- 4) 출발 후 부분 취소로 최초 계약 여정 대비 전세가가 낮아지는 경우 차액의 30% 금액

(2) 상기 (1)항에 따른 취소수수료의 징수는, 당해 취소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액, 경비 및 비용을 전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권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전세계약 후 전세자가 상기(1)항과 같이 취소하거나, 대한항공이 제 7 조(4)항이나 제 9 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한 여객과의 운송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전세자는 당해 취소 또는 해지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여객이나 당해 전세항공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가 제기하는 일체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대한항공을 면책합니다.

제 9 조 규정위반 등

전세자, 여객 또는 전세항공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가 본 계약이나 정부의 규정, 규칙, 명령, 요구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항공은 전세자, 여객 또는 당해 제 3 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부담 없이 본 계약을 취소하거나, 운송이 개시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전세항공편 운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기 취소가 행해지는 경우, 대한항공은 제 8 조에 규정된 취소 수수료율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전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한 본 계약 취소나 해지는, 당해 위반 또는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전세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정부인가

본 계약에 의거한 전세항공편의 운항은 각 관계국 정부기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합니다.

제 11 조 적용 법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제 12 조 변경

본 계약상 조항의 변경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 13 조 대한항공 운송약관의 열람

대한항공의 운송약관 및 관계규정은, 대한항공의 시내 영업소나 정기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사무소에서 요청 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제목

본 계약 각 조의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 규정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